

열에너지 관리 및 탈탄소화 촉진법안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108
----------	-------

발의연월일 : 2026. 6. 5.

발 의 자 : 김주영 · 이학영 · 김태선
박민규 · 박해철 · 안호영
강득구 · 박 정 · 박균택
신정훈 · 정태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열에너지는 난방·냉방·급탕 및 산업공정 등 국민생활과 산업활동 전반에 활용되는 필수 에너지원으로, 국내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열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48% 수준으로 그 비중이 큼. 그럼에도 그간의 에너지정책은 전력 및 연료 중심으로 운영되어 열에너지의 생산·공급·이용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탈탄소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였음.

특히 산업공정, 발전시설, 소각시설, 하수처리시설, 데이터센터 등에서 발생하는 미활용열과 태양열·지열·수열 등 재생열은 활용 잠재력이 높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조사·관리하고 지역의 열수요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미흡한 실정임. 또한 열에너지는 지역별 수요 밀도, 공급 여건 및 열네트워크 구축 가능성 등에 따라 활용방식이 달라 국가 차원의 계획 수립과 함께 지역 단위의 관리체

계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재생열의 생산·공급·이용 확대를 위한 계획·조사·통계·정보체계 구축과 함께 재생열 공급 및 사용 의무화, 열구매계약 제도, 재생열특화지구 지정, 열네트워크 구축·연계, 관련 산업 및 기술 육성 등 종합적인 이행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열에너지의 효율적 관리와 탈탄소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열에너지의 효율적 관리와 탈탄소화 촉진을 위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나. 열에너지 관리 및 탈탄소화 촉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등 관계 계획과의 연계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다. 열에너지 정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열에너지 기본조사, 통계 및 정보체계 구축, 국가 열지도 작성 및 재생열특화지구 지정 제도를 도입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라. 재생열의 생산·공급 및 이용 확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 관계 사업자 등에 대한 투자 권고, 기술개발·보급지원 등 정책 수단을 마련함(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마. 일정 규모 이상의 열공급사업자 등에게 연간 열공급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열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안 제27조).

바. 공공기관, 대규모 주택단지, 데이터센터 등을 신축·개축·증축하는 경우 예상 열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열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8조).

사. 재생열의 안정적 보급을 위해 열구매 계약 제도를 도입하고, 재생열 공급인증실적을 발급하여 거래시장 등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 기반의 이행 체계를 구축함(안 제26조 및 제29조).

열에너지 관리 및 탈탄소화 촉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열에너지의 효율적 관리와 탈탄소화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재생열의 이용·보급 및 관련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열에너지”란 연료의 연소 또는 전력 등을 사용하여 발생시키거나 자연계 및 산업 공정 등에서 존재하는 열을 포집하여 증기·온수·냉열 등의 형태로 생산·변환·저장·수송·공급 또는 이용되는 에너지로서 냉방·난방·급탕·취사·산업공정 등에서 소비되는 것을 말한다.
2. “미활용열”이란 산업 공정, 발전, 폐기물 소각, 하수처리, 데이터 센터 등 부수적으로 발생하여 대기나 수중 등에 버려지는 열로서 적절한 방법으로 회수하면 에너지로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열을 말한다.

3. “재생열”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열에너지를 말한다.

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에너지원을 이용하여 생성한 열에너지

나. 미활용열

다. 그 밖에 탄소배출 저감 효과가 인정되는 열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재생열 설비”란 재생열을 생산·회수·전환·저장·공급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6. “열네트워크”란 열에너지를 수요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배관·열교환·저장·계량 등의 설비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7. “열공급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사업자를 말한다.

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자

나. 가목 이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열생산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자(자가소비용을 포함한다)

8. “열관련 연료공급자”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등 난방·급탕·공정열 등의 열에너지 생산 또는 이용에 사용되는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9. “열밀도”란 일정 지역의 면적당 열에너지 수요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열에너지 정책은 열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탈탄소화를 촉진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이바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열에너지 정책은 비용효율성·안전성·형평성·공급안정성 및 이용자의 수용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열에너지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열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탈탄소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열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탈탄소화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2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열에너지 산업의 육성 및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기관,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열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탈탄소화를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열에너지 관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열에너지의 효율 향상 및 탈탄소화 전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생활 속에서 열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재생열을 사용하도록 노력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열에너지 및 재생열의 기술개발과 이용·보급,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가열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국가열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열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탈탄소화 전환을 위하여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열에너지 이용 및 탈탄소화 전환에 관한 국가열에너지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제11조에 따른 열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④ 국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열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탈탄소화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열에너지 탈탄소화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열에너지 탈탄소화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4. 열에너지의 수급 현황 분석과 소비실태 조사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5. 열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탈탄소화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6. 열에너지 탈탄소화를 위한 지원 및 제도적·행정적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7. 재생열 생산·소비 체계 마련 및 보급에 관한 사항
8. 재생열 설비 및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9. 재생열 기술 수준의 평가와 보급 전망 및 기대효과에 관한 사항
10. 재생열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목표와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11. 재생열 분야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열에너지 표준화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3. 에너지복지제도와의 연계 및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
14. 직전 국가계획의 추진실적 및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15. 재원조달 방안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열에너지의 탈탄소화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 등으로 국가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국가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계획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열공급사업자, 열관련 연료공급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국가계획의 수립·변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실행계획)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 등으로 실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국가계획 등과의 연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개별 법령에 따른 열에너지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가계획 및 제8조에 따른 실행계획과 연계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려는 계획에 대하여 국가계획과의 부합성 및 연계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획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지역열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열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탈탄소화를 위하여 국가계획 및 실행계획에 따라 지역의 현황 및 실정을 고려하여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열에너지 정책에 관한 계획(이하 “광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열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탈탄소화를 위하여 국가계획, 실행계획 및 광역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군·구의 열에너지 정책에 관한 계획(이하 “기초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광역계획 및 기초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열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탈탄소화 목표와 추진 방향, 연도별 이행대책에 관한 사항
2. 지역 열에너지의 수급 현황·전망 및 소비실태 분석에 관한 사항
3. 미활용열 등 지역 내 재생열원의 발굴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4. 열네트워크의 효율 향상 및 재생열 생산·공급 인프라의 확충·개선에 관한 사항
5. 열에너지 취약계층의 발굴 및 지원 등 에너지 복지에 관한 사항
6. 직전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재원 조달 방안 및 투자 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열에너지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⑤ 지역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초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역계획이 국가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자문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역계획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⑧ 정부는 지역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지역계획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지역계획의 수립·시행·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열에너지정책심의회) ① 열에너지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과 재생열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열에너지정책심의회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열에너지 탈탄소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국가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열에너지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계획의 자문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서 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재생열의 활용,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
7. 재생열 공급의무 및 사용의무의 이행과 관련한 공급인증실적 정산기준 및 제31조에 따른 기준가격(산정기준 및 변경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8. 재생열의 이용·보급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열에너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열에너지·기후·산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국회 보고 및 연차보고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계획을 수립·변경하여 확정할 때에는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년 열에너지의 수급 동향과 전망, 시책의 추진 현황 및 성과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회 보고의 시점, 방법 및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열에너지 통계·기반 구축 등

제13조(열에너지 조사·통계 및 정보체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계획의 수립·평가와 정책 집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열에너지에 관한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열에너지 통계 및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조사 및 통계·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열공급사업자
4. 열관련 연료공급자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1조에 따른 에너지 다소비사업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조사·통계 작성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기본조사 및 열에너지 통계의 내용,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열지도 및 재생열특화지구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열 등의 잠재량을 산정하고, 국가 열지도를 구축하여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열지도를 기초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열네트워크 구축·연계 및 재생열 공급이 가능한 지역을 재생열특화지구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재생열특화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대상 지역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재생열특화지구에서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의 승인·인가 등을 신청하기 전에 열네트워크 연계 가능성 및 재생열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 요청·회신 기한, 조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열지도 구축, 재생열특화지구의 지정 기준·절차 및 제2항과 제4항에 따른 협의·사전협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등으로 재생열특화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열네트워크 상호협력 등) ① 열공급사업자는 운영 중인 열네트워크에 다른 열공급사업자나 재생열생산자가 상호접속을 요청하는 경우 그 기술적·경제적 적합성 및 열수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여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접속으로 인하여 열네트워크의 안전이나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열네트워크를 접속하여 이용하려는 자는 열공급사업자에게 적정한 접속 비용 및 망 이용요금 등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2항에 따른 상호접속의 범위·조건·절차, 요금 산정 기준 및 분쟁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장 열에너지 전환 촉진

제16조(열에너지 탈탄소화 전환계획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열에너지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탈탄소화 전환계획(이하 “전환계획”이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열공급사업자 및 열관련 연료공급자
2.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열에너지 다소비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자

② 전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전환계획 작성 의무자의 규모, 업종, 열의 생산·공급·이용 형태 및 그 밖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달리 정하거나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설비 현황과 최근 3년간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사항
2. 재생열로의 전환 시나리오와 단계별 로드맵에 관한 사항
3. 열공급 안정성 영향 및 소비자 요금 영향 완화 대책에 관한 사항
4. 근로자·협력업체 전환지원 등 공정전환 계획에 관한 사항
5. 재원조달 방안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전환계획을 검토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환계획의 이행 실적을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전

환계획의 보완·변경, 이행실적의 제출 또는 이행을 위한 조치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안보·공공안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환계획의 제출 기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환계획의 작성·제출 및 이행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전환계획 작성·제출, 제출 기한, 점검 및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생열생산설비로의 전환 권고 및 촉진) ①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열원 설비를 재생열 설비로 전환(이하 “재생열 설비의 전환”이라 한다)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열지도 분석 결과 재생열 이용 잠재량이 풍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노후 화석연료 설비를 보유한 사업자에게 재생열 설비로의 전환을 권고하거나 전환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열에너지의 활용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재생열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재생열을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재생열 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2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거나 전환계획을 수립한 사업자에게 제18조,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열에너지 탈탄소화를 위한 재정 및 금융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열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탈탄소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열밀도, 사업의 규모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재정상·금융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생열 생산·공급·이용 시설 및 미활용열 회수 설비의 설치·개선
2. 열공급사업자가 수행하는 열네트워크의 구축·보수 및 효율화 사업
3. 열공급사업자 및 열관련 연료공급자의 재생열 연료 전환 또는 설비 전환 사업
4. 공동주택 등 열수요처 내 노후 수요처 열설비 교체 및 마을단위 열공급체계 구축 사업
5. 그 밖에 열에너지의 탈탄소화 전환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효율 전기 열원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의 지원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재생열 전환 촉진을 위한 운영 특례) ① 정부는 재생열 설비로 생산된 재생열의 초기시장 형성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생열 이용에 따른 요금 보조 또는 차액보전제도
2. 재생열 공급사업자의 초기 투자비 회수기간 등을 고려한 요금조정 인센티브
3. 재생열 이용 소비자 및 전환 사업자에 대한 관계 법령에 따른 세제 지원
4. 지역별 재생열 공급 여건과 주민 부담 수준을 고려한 요금감면 및 보조금 지원
5. 화석연료 기반 열소비의 탄소배출비용 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반영한 요금제도 운영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열 전환 목표의 조기 달성 및 초과 달성 등을 위하여 해당 사업자와 온실가스 감축 및 재생열 전환에 관한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자발적 협약을 성실히 이행한 자에게 제18조,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거나 용자 조건의 우대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 대상, 절차 및 자발적 협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열에너지 기술개발 및 사업 지원) ① 정부는 열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탈탄소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및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재생열의 생산·변환·저장 및 공급에 관한 기술
2. 열네트워크의 고도화·지능화 및 최적화 연계 기술
3. 미활용열의 회수 및 활용 효율 향상 기술
4. 열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기술
5. 그 밖에 열에너지 탈탄소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범사업의 실시 및 참여자에 대한 지원
2.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투자에 드는 자금의 용자
3. 재생열 기술의 개발사업을 통해 정부가 취득한 산업재산권의 무상양도·실시권 허여 및 기술 교육·홍보
4. 실용화된 재생열 설비의 보급 및 지방자치단체 연계 사업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거나 국제표준화 또는 공용화가 이루어진 재생열 설비에 대하여 제2항 4호에 따른 보급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열에너지 분야의 첨단기술을 개발하거나 적용하는 기업을 육성하고, 열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탈탄소화 전환 모델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의 실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재생열네트워크 투자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재생열특화지구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생열 공급 기준을 충족하는 열네트워크(이하 “재생열네트워크”라 한다)의 신설·확장·노후교체 또는 탈탄소화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 필요한 투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재생열의 공급·연계에 필요한 배관망 및 부대설비(계량·제어설비를 포함한다)의 구축·개선
2. 열네트워크에 연계되는 화석열원에서 재생열원으로 전환을 위한 설비 개조·대체 및 고도화

3. 열네트워크의 상호접속·계량·디지털화 및 손실저감 설비의 설치·개선

4. 그 밖에 열에너지의 탈탄소화 전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전환계획을 제출한 자가 수행하는 사업

2. 취약계층·공공임대주택 등 요금영향 완화가 필요한 지역 또는 도서·산간 등 에너지 비용이 높은 지역에 대한 사업

3. 대규모 열저장, 광역 열네트워크 연계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사업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 대상, 절차, 기준, 우선지원 요건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지원금의 환수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융자·보조·차액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업을 중단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지원금의 반환 범위, 산정, 절차, 가산금(이자) 부과 여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① 국가는 재생열 설비의 설치·운영 또는 열네트워크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에 대하여 수의 방법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계약의 기간 또는 사용허가의 기간은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에 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에 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축조된 영구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용관계 종료 시의 철거·원상회복 또는 국가 귀속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열 설비의 설치·운영 또는 열네트워크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에 대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른 대부계약의 기간 또는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투자규모, 시설의 내구연한 및 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⑧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 ⑨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 ⑩ 제9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⑪ 제9항에 따라 축조된 영구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용관계 종료 시

의 철거·원상회복·귀속 또는 기부채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⑫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범위 및 선정·확인 절차는 대통령령(공유재산의 경우에는 조례를 포함한다)으로 정한다.

제24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열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탈탄소화 전환 등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확보 및 자질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열에너지센터) ① 열에너지 전환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산업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열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재생열 의무화 제도의 운영 지원 및 관리
2. 공급인증기관의 업무 지원
3. 재생열네트워크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
4. 재생열 설비의 적합성 확인·표준화에 관한 기술검토 및 지원
5. 통계 작성 지원, 국제협력 및 홍보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지정의 취소, 사업 수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열에너지 전환 촉진을 위한 의무화

제26조(열구매 계약) ① 정부는 재생열의 안정적 활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열구매 계약 제도(이하 “열구매 계약 제도”라 한다)를 도입·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열공급자와 장기 열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열공급사업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열구매 계약 제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표준계약서의 작성·보급 및 사용 권고에 관한 사항
2. 계약기간, 계약물량, 공급품질 및 계량·검증 등에 관한 사항
3. 가격결정 및 정산 방식, 가격조정(연동) 기준에 관한 사항
4. 계약체결 절차 및 공공기관의 계약방식에 관한 사항
5. 계약의 변경·해지 및 불가항력 등 위험배분에 관한 사항

6. 분쟁조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7조(재생열 공급의무화)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열에너지 분야의 탄소중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열공급사업자 및 열관련 연료공급자(이하 “재생열공급의무자”라 한다)에게 연간 열공급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열로 공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를 부과한다.

② 재생열공급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1. 자체 설비를 통한 회수·생산 재생열의 직접 공급
2. 열공급사업자와의 열구매 계약을 통한 재생열 사용
3. 청정수소, 바이오가스 등 무탄소연료의 혼입 또는 대체 공급
4. 제29조에 따른 재생열 공급인증실적의 구매 및 제출

③ 제1항에 따른 의무 공급 비율, 의무량 산정 기준(무탄소연료 혼입분의 환산·검증을 포함한다) 및 이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재생열 사용의무화)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열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열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3.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4.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5.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제3호에 따른 정부출연기관 또는 제4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7.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택단지
8.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를 다량으로 소비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 또는 일정량 이상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용자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1. 자체 재생열 생산 설비의 설치·운영
2. 열공급사업자와의 열구매 계약을 통한 재생열 사용
3. 제29조에 따른 재생열 공급인증실적의 구매 및 제출. 다만, 공급인증실적 제출에 의한 이행 인정 범위 및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녹색건축

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및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에 재생열 산정 기준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술적·지리적 여건상 재생열 사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를 감면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⑤ 재생열 사용의무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재생열 공급인증실적 등) ① 재생열을 생산하여 열네트워크에 공급한 자(재생열생산자를 포함한다)는 그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재생열 공급인증실적(이하 “공급인증실적”이라 한다)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자가소비에 대한 공급인증실적 발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방식에 따른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열원의 종류,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공급인증실적 발급 시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③ 공급인증실적을 발급받은 자는 그 공급인증실적을 거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이하 “거래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안정, 소규모 거래, 시범사업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시장에서 거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공급인증실적의 유효기간, 발급·취소, 등록 및 거래 절차, 자가 소비 발급 요건, 이중계상 방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재생열 생산설비 또는 재생열 공급·이용 설비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치·개선 등에 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실적의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공적 지원을 받은 경우 공급인증실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발급하고,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만 발급할 수 있다.

제30조(공급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급인증실적의 발급, 등록, 관리 및 거래시장 개설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공급인증기관(이하 “공급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급인증기관은 공급인증실적 거래시장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규칙을 제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급인증기관의 업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업무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급인증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 공급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지정기간, 운영규칙의 승인 사항, 감독 및 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무 이행 확인 및 기준가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열 공급의무 및 사용의무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대상자에게 이행실적, 공급인증실적 제출내역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급인증실적의 거래·정산 및 제33조에 따른 과징금 산정 등을 위하여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정 방식, 적용기간, 자료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무 이행의 유예 및 면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천재지변, 재생열원의 부재, 지리적 여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33조(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급의무자가 의무공급량에 부족하게 재생열을 공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족분에 해당 연도에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가격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제35조에 따른 열에너지 탈탄소화 지원 사업비의 재원으로 사용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열에너지 공급의무가 최초 적용되는 연도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④ 과징금의 부과·징수 절차, 납부기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재생열 전환에 관한 정의로운 전환 지원) ① 정부는 열에너지의 탈탄소화 전환 및 재생열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산업 구조 변화,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위축 등 사회·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동자, 지역사회, 중소기업 및 열에너지 취약계층을 고려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관계 법령에 따른 정책과 연계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서 정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생열 설비·기술 및 인력 전환에 따른 노동자의 직무역량 강화, 재교육 및 재취업 지원

2. 중소·중견기업의 공정전환, 설비교체, 효율화 등에 필요한 재정·관계 법령에 따른 세제·기술 지원

3. 재생열 도입 과정에서 열요금 변동 등에 따른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대책

-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지역 특성, 산업구조, 열수요 특성 및 인구구조를 고려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재생열 도입이 일자리, 산업구조, 기술경쟁력,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의로운 전환 정책과 연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사업비의 조성 및 사용) ① 정부는 열에너지의 탈탄소화를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열에너지의 자원조사, 기술수요조사 및 통계 작성
2. 재생열의 연구·개발, 기술평가 및 시범·보급사업
3. 재생열의 공급 및 사용 의무 이행 지원
4. 재생열 설비 설치기업의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5. 재생열 관련 국제협력 및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6. 그 밖에 재생열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6조(재생열에의 투자권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열의 기술 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하여 제35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37조(재생열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하 “시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재생열 설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비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에 따라 제1항의 설비를 설치한 시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의 실시 및 그 결과의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센터에 제출할 수 있으며, 센터는 이를 종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후관리의 대상설비의 범위, 사후관리의 내용·방법, 요청 및 보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국제협력) 정부는 열에너지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하여 열에너지 기술·정보의 교류, 공동연구, 표준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추진함으로써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및 벌칙

제3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전문성·기술성이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센터, 공급인증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급인증실적의 발급·등록·관리 및 거래시장 운영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급인증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인증실적을 발급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인증실적이 발급되도록 한 자(그 사실을 알면서 공급인증실적의 발급·취소·검증 업무에 관여한 공급인증기관 임직원을 포함한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인증실적을 거래한 자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또는 제24조에 따른 지원(보조금·차액보전·용자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포함한다)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지원받은 금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③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래시장 외에서 공급인증실적을 거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 따라 전환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3항 후단에 따른 명령(전환계획의 보완·변경, 이행실적의 제출 또는 이행을 위한 조치를 포함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5항 후단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국가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열에너지 조사·통계 및 정보체계 구축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할 수 있다.